

Health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소담한방요양원

Silver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1조(목적 및 관련법규)

- 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방침이라 한다)은 소담한방요양원의 시설 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소담한방요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방침은 다음 각 호의 법과 규칙 등에 준하여 작성된다.
 1. 법률 제128445호「개인정보보호법」
 2. 대통령령 제26140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 행정자치부령 제1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4. 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 정보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관리책임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소담한방요양원시설장을 말한다.
6. 「실무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담당자(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소담한방요양원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운용 중이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도 실제 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방침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한다.

- ① 소담한방요양원시설장은 관리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 및 실무책임자와 업무담

당자를 검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2.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5.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6.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8. 그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소담한방요양원의 사무국장은 실무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 한다.
1.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2.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수집 열람 처리 등 요구에 대한 조치(민원의 접수 및 처리)
 3.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 자에 대한 교육
 4. 그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소담한방요양원의 간호과장과 복지행정팀 등의 사무국 직원은 업무담당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수집 열람 처리 등 요구에 대한 조치(민원의 접수 및 처리)
 2. 그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와 설치대수 및 설치장소)

-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2.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소담한방요양원의 CCTV는 총 61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붙임 1 참조)
1.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침실 25대(4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22대(공동거실 9대, 복도 9대)
 3. 외부공간 2대(현관 및 측문 각 1대)
 4. 기타, 주차장 및 산책로 각 2대, 특별실, 체력단련실, 격리실, 세탁실 각 1대
- ④ 3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 8호의 서식** 따른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1층 출입구와 1층 외부 3면 3곳, 지하, 2층, 3층, 5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본체나 모니터 옆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범위 및 시간)

- ① 영상정보처리기의 촬영범위는 주차장, 출입구, 생활실 등 낙상사고 및 방범 취약시설 주변으로 한정한다.
- ②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10만 화소)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장치 : 5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2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수집 및 사용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 ② 제5조제1항~3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운영자의 금지행위)
 1.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제9조(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열람가능사유)

-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 39조11등 법령에서 전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노인 안전 업무수행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 수사와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관계기관은 **별지 제 1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소자
2. 입소자의 보호자(입소자의 신상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
3. 관계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법률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기관) 등

③ 화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열람요청을 할 수 없다.

1. 노인학대가 현저히 의심 될 경우
2.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법률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

④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단, 영상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외부로 유출할 수 있고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자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경우
2. 기타 법률에서 유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⑦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2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⑨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 ① 책임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제5조 1항,2항,3항의 담당자로 제한한다.
- ④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①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방법,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2.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주보호자(입소계약자)가 열람 요구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2.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제19조(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설치현황

	장소	지하	1층	2층	3층	5층	6층	합계
필수 구역	공동거실		3	2	2	2		9
	복도		3	3	3	3	1	13
	침실		1	8	8	8		25
	현관		2					2
	물리치료실					1		1
	프로그램실			1				1
	식당						1	1
	엘리베이터	1						1
기타	주차장	2						8
	특별실		1					
	체력단련실		1					
	격리실		1					
	세탁실						1	
	산책로						2	
합계		3	12	14	13	14	5	61

총 61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 열람 ☐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열람 요청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자 외 인물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 후 편집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편집과정을 거친 후 열람해야 한다.				10일 이내
청구인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인 적사항 (수급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연도/월/일/시간 구체적 기재)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소담한방요양원 귀하</p>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소담한방요양원 사무국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소담한방요양원 귀하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소담한방요양원 귀하</p>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
니다.

년 월 일

소담한방요양원 귀하

[별지 제 5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2 . . . ~ '2 . . . 까지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외부 유출 유·무	잠금장치	성명	서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 8호 서식]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소담한방요양원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소담한방요양원 귀하